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직할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 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용량 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CMP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②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폐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 ③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가동 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이행 기한 10일이전에 채취한 방류수를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측정한 수질시험성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보류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론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제55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관련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55조제11호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법제5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상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가동을 하지 않은 정화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자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범제9조, 제10조제14조및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동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제9조(수수료의 분할징수) ①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합리적인 수수료부담과 내부청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매월 분할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분할징수하였을 때에는 매월 징수한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대행업자가 청소한 양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1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정화조오니를 포함한다) 처리수수료는 범소소유자 및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지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등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뇨관련영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때에는 신분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할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의 지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지, 벼지등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별표3과 같다.

제17조 (가축사육의 제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4와 같다.

제18조 (과태료부과) ① 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및 대상은 별표5와같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위반내용,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태료 납부기한)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 수납부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업무의 위임·위탁등) ① 구청장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지도·관리업무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정화조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록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지할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4항 및 부산지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 기준 (제5조제1항관련)

구 분	자 본 금	인 력	차 량 및 장 비	차 고
분뇨수집 운 반 업	0 법인: 1억 원이상 0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0 운전원: 2인이상 0 수거원: 2인이상 0 사무원: 2인이상	0 용량합계: 10,000ℓ 이상 흡인식 차량소유 (탈취시설 부착) 0 신고용전화 : 2대 이상	0 최저차고면적(대당) - 5톤미만 : 13㎡ - 5톤이상 10톤미만 : 26㎡ - 10톤이상 : 36㎡
정 화 조 청 소 업	0 법인: 1억 원 이상 0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0 수질분야 환경 기사 위생사, 오물처리사 또는 고등학교졸업이 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0 운전원: 2인이상 0 수거원: 2인이상 0 사무원: 2인이상	0 용량합계: 15,000ℓ 이상 (탈취시설 부착) 0 신고용전화 : 2대 이상	0 최저차고면적(대당) - 5톤미만 : 13㎡ - 5톤이상 10톤미만 : 26㎡ - 10톤이상 : 36㎡

※ 차고는 자가차고 또는 임대도 가함.

< 별 표 2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 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18 ℥	267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시 10원미만은 버린다
정화조 청소	기본금액 : 0.75m ³ 당 (단, 0.75m ³ 미만은 0.75m ³ 로 본다) 초과금액 : 0.1m ³ 당	14,725 원 1,040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고 분뇨정화조는 규격(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요금계산시 100원미만은 버린다

< 별 표 3 > 분뇨수집·운반 제외지역 (제16조 관련)

-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 별 표 4 >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17조 관련)

부산직할시 가축사육 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별표 제1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위반행위가 있은달 이전 최고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부과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경우	700	800	1,000

부과 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이후
(2) 1일 처리용량이 1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2.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법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인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 한 자 (법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반기전에 사용한 자.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부과 대상	부과금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이후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 시공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말린 자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			
가. 방류수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리용량 200㎥이상 또는 1일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이상	100	200	500
(2)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1회 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500	8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이후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경우	300	500	1,000
라. 악취가 발산되거나 해충이 외부로 번식. 발생이 되는 경우	100	200	5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담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1항)	1,000	1,0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 제24조제2항 또는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300	500	800
8.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			
(1) 방류수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9.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 관련영업자(법 제35조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8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천재 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200	500
10.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영업자 (법 제35조제6항)	300	5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위반이후
11.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	300	500	1,000
12.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3항)	200	400	1,000
13. 기술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500	800	1,000
14.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자(법 제44조)	300	500	1,000
15. 휴업.폐업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법 제46조제1항)	300	500	1,000
16.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제1항)	300	500	1,000